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회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2항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	투융자집합투자 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항	연금저축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2항	주택 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5항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9항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3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2항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